

《 2017년 10월 경상남도 반사회 홍보목록 》

연번	홍보자료	도 담당부서
1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비리' 집중신고기간 운영	감사관실
2	주한몽골 명예영사관 개관 안내	국제통상과
3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패럴림픽대회 안내	행정과
4	편리하고 경제적인 부동산 전자계약 사용하세요!	토지정보과
5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사업	서민복지노인정책과
6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교체(기간연장) 안내	장애인복지과
7	암검진!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보건행정과
8	가을철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보건행정과
9	2017년 가을철 농촌일손돕기 추진	친환경농업과
10	국가 배상 제도 안내	도로관리사업소
11	불법 소지 무기·탄약류 자진 반납	육군제6128부대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비리’ 집중신고기간 운영

(자료제공 : 감사관실 ☎ 055-211-2187)

- 기 간 : 2017. 9. 1. ~ 11. 30.
- 신고대상 : 6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

6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

- ① 일자리 창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 ②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 ③ 복지분야 (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보조금 부정수급
- ④ 사학 등 교육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및 비리
- ⑤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 ⑥ 기타분야(여성가족·중소기업지원·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 ⑦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교직원 인사·채용, 학교급식 등 관련 부패행위)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팩 스 : (044) 200-7972
 - 스마트폰 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검찰, 경찰)·감사원·감독기관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주한몽골 명예영사관 개관 안내

(자료제공 : 경제통상국 국제통상과 ☎ 055-211-3275)

주한몽골 명예영사관 김해시 개관('17.09.01.)으로 몽골비자 발급을 위해 몽골대사관(서울), 몽골영사관(부산)으로 가는 도민 불편 해소

○ 명예영사관?

- 파견국(몽골)에서 영사 임무 수행을 위해 위촉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외교부의 인가를 통해 임무수행이 가능

○ 주한몽골 명예영사관 안내

- 위 치 :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208호(김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 연락처 : 055-909-1001
- 운영시간 : 10:00 ~ 16:00(월~금, 토·일·공휴일 휴관)
- 명예영사 : 김인태[(주)금강스틸 대표이사]
- 영사관 업무 : 몽골 비자 발급, 몽골간 경제, 문화, 관광 교류 등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패럴림픽 대회 안내

(자료제공 : 행정국 행정과 ☎ 055-211-3525)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동계스포츠 행사로,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범국가적 역량 결집과 전국민의 관심·참여 필요

○ 대회개요

- 대회기간
 - 올 림 픽 : '18. 2. 9. ~ 2. 25.(17일간)
 - 패럴림픽 : '18. 3. 9. ~ 3. 18.(10일간)
- 슬 로 건 : **Passion.Connected.** 하나된 열정!
- 개최장소 : 강원도 평창·강릉·정선 일원
- 경기종목 : 올림픽 15종목, 패럴림픽 6종목

구 분	설 상(7)	빙 상(5)	슬라이딩(3)
종 목	* 알파인 스키 * 바이애슬론 * 크로스컨트리 스키 * 프리스타일 스키 * 노르딕 복합 * 스키점프 * 스노보드	*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 스피드 스케이팅 * 피겨 스케이팅 * 아이스 하키 * 컬링	* 봅슬레이 * 루지 * 스켈레톤
장 소	알펜시아, 용평, 보광, 정선	강릉 올림픽파크, 관동대	알펜시아

- 참가규모 : 올림픽약 95개국 5만여명, 패럴림픽약 45개국 2만5천여명

○ 입장권 구매 방법

구 분	온라인 구매	오프라인 구매
판매기간	'17. 9. 5. ~	'17. 11. 6. ~
예 매 처	* 올림픽 입장권 홈페이지 (tickets.pyeongchang2018.com)	* 티켓센터(서울시청, 강릉시청, 강원도청) * 아울렛(인천/김포공항, KTX 19개 역사) * 경기장 매표소
예매자격	* 대한민국 거주 중인 자 * 만 14세 이상(18세 이하는 보호자 동의 필요)	
결제수단	비자카드, 계좌이체	비자카드, 현금

편리하고 경제적인 부동산 전자계약 사용하세요 !

(자료제공 : 도시교통국 토지정보과 ☎ 055-211-4445)

■ 8월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전국 시행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이란?

부동산거래를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계약하는 시스템으로 더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세부내용 홈페이지 <https://irts.molit.go.kr> 참조)

■ 전자계약시스템의 장점 및 이용 혜택

1. 경제적입니다.

- 대출 우대금리 적용(KB국민·우리·신한·BNK부산·대구은행)
 - 주택매매, 전세자금 대출금리0.2%p 인하
(1억7천만원 대출시 417만원 절약)
 - 5천만원 이내 최대 30% 대출금리 할인
- 등기수수료(전세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 30% 절감
- 부동산서류 발급 최소화(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생략)

2. 편리합니다.

-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하며 별도의 계약서 보관이 필요 없음
-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자동 부여(주민센터, 수수료 면제)
- 부동산거래 실거래신고 자동 완료

3. 안전합니다.

-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설명 차단
-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
- 공인중개사 및 거래당사자 신분확인 철저
- 개인정보 안전관리시스템 적용

■ 준비물

- 매도인·매수인 명의의 태블릿PC 또는 스마트폰

“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안전한 거래가 가능한
부동산 전자계약 사용하세요 ! ”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사업

(자료제공 : 복지보건국 서민복지노인정책과 ☎ 055-211-4853)

경상남도는 저소득층 홀로어르신을 대상으로 연중 무료로 세탁물을 수거, 세탁, 건조후 배달하는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사업”을 실시합니다.

서비스 내용

- 물세탁 가능한 이불 및 대형빨래 무료 세탁서비스
- 세탁차량으로 방문하여 직접 세탁물 수거 및 전달
- 65세이상 어르신 1인당 1~2채 이불빨래 가능

서비스 대상

- 경상남도 거주 65세이상 저소득 홀로 어르신

서비스 운영방법

- 주민센터 및 경로당(마을회관)에 직접 방문하여 실시
- 신청 접수 후, 방문계획 별도 안내
- 운영시간 : 오전 10시 ~ 오후 4시
- 대상시군 : 도내 전 지역
- 수행기관 : 마산지역자활센터(창원, 진주, 함안)
김해지역자활센터(김해, 양산)
거제지역자활센터(통영, 거제, 사천, 고성)
함양지역자활센터(산청, 함양, 거창)
합천지역자활센터(의령, 창녕, 합천)
하동지역자활센터(남해, 하동)

신청문의

- ☎ 055)602-1633 경남광역자활센터 및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교체(기간연장) 안내

(자료제공 :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 ☎ 055-211-5116)

□ 보건복지부(장애인자동차표지)

- 주차가능 표지의 명칭, 색상·모양을 변경
 - (명칭) '장애인자동차표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 (모양)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 기존 표지와 구분 용이
 - (색상) 본인 운전용과 보호자 운전용 구분, 단속 시 식별 용이
- 집중교체('17.1~2월), 계도기간('17.3.1.~8.31, 6개월) 및 기간연장('17.9.1.~12.31, 4개월)을 거쳐 위반차량 과태료부과('18.1.1.부터 종전표지 사용 불가)

	종전		현행(변경)	
			본인 운전용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주차가능)				

□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

- '17.4~12월 말까지 기존 사각형의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전면 교체
 - '18.1.1일부터 기존 사각형 표지를 사용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시 과태료(10만원) 부과

기존(사각형)	변경(휠체어형상화한 원형)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이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되어 현재 사용 중인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교체하여 재발급합니다.

2017. 12. 31.까지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새로운 표지로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교체 안내 -

가. 교체기한 : 2017. 12. 31.까지

* '18. 1. 1부터는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10만원) 부과 예정

나. 교체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다. 교체절차 :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 기존 주차표지 반납 →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보행상 장애여부 확인) → 주차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또는 주차불가인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로 교체 발급

*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표지 교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방문 요망
라. 주의사항 : 반드시 사용중인 “주차가능” 표지를 반납한 후 재발급 받아야 함

마. 대리신청 : 읍·면·동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이 대리 신청·수령 가능
(대리인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용중인 주차표지를 반납하여야 함)

이번에 교체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명칭 변경과 함께 기존 표지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모양을 변경하고, 본인용과 보호자용 표지가 쉽게 구분되도록 색상을 달리하였습니다.

2018.1.1.부터는 종전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게 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늦어도 2017.12.31.까지는 교체 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주차료 할인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기능을 겸하고 있음

현재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아 사용중인 지체장애 6급(하지관절, 척추 장애)의 경우 2010.1.1.이후 ‘보행상 장애 기준’ 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번 주차표지 교체 시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 표지로 교체하여 발급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시어 표지 교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만이 이용 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있으나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는 차량에 대한 단속요청이 장애인과 장애인단체 및 국민들로부터 지속 제기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과 점검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차량을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타고 있는 경우만 주차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문화가 올바르게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암검진!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자료제공 : 복지보건국 보건행정과 ☎ 055-211-4935)

국가에서는 암 발생과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하여 암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10월 이후는 수검자가 집중되므로 미리 검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검진대상

- 출생연도(2017년도:홀수)에 따라 암종별 연령 및 검진주기에 해당하는 자

암 종	위 암	간 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연 령	만40세 이상	만40세 이상 고위험군	만50세 이상	만40세 이상 여성	만20세 이상 여성
검진주기	2년	6개월	1년	2년	2년

※ 간암, 대장암은 출생연도 상관없음

○ 검진기간 : 2017년 12월 31일까지

○ 검진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으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암검진기관을 방문

※ 음식이나 채변 등 검진 전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의료기관 문의 후 이용

- 대장암 검진에 필요한 채변용지와 용기는 보건소에서도 받을 수 있음

○ 검진항목 및 검진 의료기관 확인 :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주소지 보건소

○ 기타 (암환자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2017년 암검진비 지원 대상자중 국가암검진을 통해 신규로 암을 확진받은 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자 (직장가입자 87,000원, 지역가입자 90,000원 이하)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연간 최대 200만원

- 신청 및 지급기간 : 주소지 관할 보건소

가을철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자료제공 : 복지보건국 보건행정과 ☎ 055-211-4925)

- 농작업 및 풀숲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 준수
- 야외 활동 후 이유 없는 발열증상, 가피 등 발생 시 병원 방문

○ 농작업, 등산 등 가을철 야외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대한 예방수칙 준수 요함.

○ **쯔쯔가무시증**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생, 유충이 왕성히 활동하는 9월말 ~ 11월말까지 전체 환자의 90% 이상이 발생. 경남에서는 '14년 1,169명, '15년 1,591명, '16년 2,338명, '17년 8월 말까지 220명이 발생, 최근 1년간 경남의 환자 발생빈도가 제일 높음, 쯔쯔가무시에 감염된 털진드기에 물려서 발생하며, 고열, 두통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일으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2013년 국내에 첫 발생, 살인진드기 라고도 불리며, 경남에서는 '14년 5명(1명 사망), '15년 10명(5명 사망), '16년 15명(2명 사망), '17년 9월 현재 9명(1명 사망)이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증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물려서 발생, 1~2주 잠복기를 거쳐 발열, 소화기계 증상(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이 주 증상,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음.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

○ 작업 및 야외활동 전

- 작업복과 일상복은 구분하여 입기
- 작업 시 긴팔, 긴바지, 모자, 목수건, 토시, 장갑, 양말, 장화를 착용
- 작업 시에는 소매를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
- 진드기 기피제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있음

○ 작업 및 야외(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풀밭 등)활동 시

-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기
- 돛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돛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리기
-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
- 진드기가 붙어 있을 수 있는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 작업 및 야외활동 후

- 옷을 털고, 반드시 세탁하기, 즉시 몸 씻기
-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허리, 무릎 뒤,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

2017년 가을철 농촌일손돕기 추진

(자료제공 :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 055-211-6325)

□ 일손돕기 개요

- 기 간 : 2017. 10. 10 ~ 11. 18(40일간) *중점추진기간 : 17.10.22~11.10
- 지원대상 : 도내 농업인(고령농, 장애농, 부녀농 우선지원)
- 지원내용 : 과실수확, 마늘·양파 이식, 전작물 수확 등

【일손돕기 농가 선정기준】

- 일손돕기 우선지원대상 : 고령농, 장애농, 부녀농 등
- 경남의 수작업 일손부족 심한 농작업 : 과실(단감) 수확
- ※ 단감재배면적('17.03.24 행정조사) : 도 7,992ha *①창원 2,004ha, ②진주 1,154ha, ⑥ 함안 970ha

<도 및 시군별 농촌일손돕기 추진센터 >

담당부서	연락처
경 상 남 도 친환경농업과	211-6323~6
창 원 시 농업기술과	225-5422
진 주 시 농 축 산 과	749-6184
통 영 시 농업기술과	650-6321
사 천 시 기술지원과	831-3870
김 해 시 농 축 산 과	330-4313
밀 양 시 농 정 과	359-7123
거 제 시 농업지원과	639-6393
양 산 시 농 정 과	392-5313
의 령 군 농업정책과	570-2613

담당부서	연락처
함 안 군 농 축 산 과	580-4455
창 녕 군 농업정책과	530-6063
고 성 군 친환경농업과	670-4264
남 해 군 농업기술과	860-3963
하 동 군 농업소득과	880-2423
산 청 군 농 축 산 과	970-7812
함 양 군 농 축 산 과	960-4505
거 창 군 향노화산업과	940-8193
합 천 군 농업지도과	930-3973
농협경남지역본부	268-1721

국가 배상 제도 안내

(자료제공 :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 ☎ 055-254-4163)

○ 국가배상제도란?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속, 적절한 배상을 하여주는 제도

* 관련근거 : 「국가배상법」 제12조(배상신청)

○ 신청대상

- 공공시설물(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 신청방법

- 배상신청 장소 : 각 지방검찰청 민원실
- 배상금 지급청구서 제출기관 : 각 지구배상심의회 해당 지방검찰청 등
- 구비서류

구 분	내 용
공통 구비서류(모든사건)	* 신청서 1통(배상심의회에 양식 비치) * 주민등록표 등본 1통
건물, 차량, 선박 등 피해의 경우	*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등본 1통 * 수리비 영수증 또는 그 내역명세서 1통 * 월수입증명서(수입손실이 있는 경우) 1통
기타 손실의 경우	* 손해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서류 1통

< 배상심의회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

지구배상심의회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해당지구배상심의회를 거쳐 법무부나 국방부에 설치된 본부배상심의회 또는 특별배상심의회에 재심신청이 가능.
재심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소송제기도 할 수 있음

도로시설물 관리 문제로 인한 물적 · 인적 피해 발생



신청인 국가배상신청서 작성
[피해발생지 또는 주소지 관할 검찰청(민원실) 방문]



사건에 대한 사실조회 (검찰청→도로관리기관) 및 회신



지구배상심의회 개최(배상금 심의 · 결정)



배상결정통보(신청인, 도로관리기관)



배상결정 동의시(신청인, 도로관리기관) 배상금 지급

- ※ 신청인 동의 : 동의서 및 청구서 작성 도로관리기관에 우편 송부
- 도로관리기관 동의 : 신청인의 동의서 및 청구서 접수 → 배상금 지급(2주 이내)
- ※ 부동의시 : 소송 등 절차 이행

불법 소지 무기·탄약류 자진 반납

(자료제공 : 육군 제6128부대 ☎ 1661-1133)

○ 기 간 : 2017년(연중 지속)

○ 대 상

- 무기류 : 권총, 소총, 제작 총기류 등

- 탄약류 :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 신고/반납 요령

- 가까운 경찰서나 군 부대로 신고

☎ 경찰서 (국번-0112) / 군부대(1661-1133)

- 전화로 불법소지 탄약 신고하면, 경찰(군)에서 현장 출동하여 회수

자진신고 기간 중 소지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나 출처를 묻지 않음